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6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 송옥주·서삼석·박찬대

유동수 · 임종성 · 안호영

박용진 · 정춘숙 · 박 정

우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된 비율은 저조함. 이처럼 매해 체불임금 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 어 있지 않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대장의 내용이나 임금액 산 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액 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낮게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액 확정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 제목 "(임금대장)"을 "(임금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로, "적어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명 및 해당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고용연월일
- 3. 종사업무 및 고용형태
- 4.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5.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의 내역
- 6. 통상임금 등 각종 수당의 계산기초
- 7.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경우 그 내역과 사유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리를 위하여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	제48조(임금대장 등) ①
업장별로 임금대장을 <u>작성하고</u>	<u>작</u>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u>다음 각 호</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u>적어야</u>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
한다.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u><신 설></u>	1. 성명 및 해당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사항
<u><신 설></u>	<u>2. 고용연월일</u>
<u><신 설></u>	3. 종사업무 및 고용형태
<u><신 설></u>	4.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u><신 설></u>	<u>5.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u>
	금 등의 내역
<u><신 설></u>	6. 통상임금 등 각종 수당의 계
	<u>산기초</u>
<u><신 설></u>	<u>7.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u>
	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경우
	그 내역과 사유
<u><신 설></u>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u>정하는 사항</u>

<신 설>

<u><신</u>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 세서 관리를 위하여 임금대장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기록 및 관리 할 수 있다.